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인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명문화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을 75%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각급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탈루세액 등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는 한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제보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탈세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 1)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 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부과제척기간(안 제26조의2제3항제3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함.

나. 가산세 감면 확대 및 합리화

1)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간 산정 합리화(안 제21조제2항제11호,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납부기한(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과소납부(또는 초과환급)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 의무도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즉시 성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상향(안 제48조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기존 100분의 50 감면 구간은 1주일 초과 1개월 이내로 조정함.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을 상향(안

제4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안 제81조의18제2항제6호 및 제3항제2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고충민원의 처리'를 명시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강화함.

라. 포상금 제도 개편(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

탈루세액, 은닉재산 등 신고자에 대해 최대 4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4. ~ 8.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4)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
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를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와 그 후”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6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및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부고지일”을 “납부고지일의 전날”로,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고지일”을 “납부고지일의 전날”로,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제2호 중 “납부고지일”을 “납부고지일의 전날”로,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납부일의 전날”을

“납부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 중 “후 1개월”을 “후 1주일 초과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18제2항제6호 중 “납세자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납세자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한한다), 납세자의”로 한다.

제8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의무”를 “신고의무 불이행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로 하

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6호”를 “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를 “해외금융계좌정보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제85조의5제1항제4호 중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외국소득세액 및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4제1항 및 제4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법정납부기한 또는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국세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략)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②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 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 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 는 때로 한다.	11. ----- -----.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 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 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 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 부지연가산세: <u>법정납부기 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u> 이 경과하는 때	나. ----- ----- ----- ----- ----- ----- <u>-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 는 때와 그 후</u> ----- -----
다. ~ 바. (생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 거래의 경우 10년) <후단 신설>

2.·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 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3. (현행과 같음)

③ -----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2. (생략)

<신설>

④ ~ ⑨ (생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

1.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소득세액 및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이월된 외국법인세액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1. -----

----- 납부고지일의 전일-----
----- 납부일-----

1의2. -----

----- 납부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
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
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

2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
지 아니한 초과환급받은 세액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지정납부기한의 다
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
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4. (생략)

2. -----

납부고지일의 전날-----
----- 납부일)-----

2의2. -----

----- 납부일-----

3. 4. (현행과 같음)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
 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
 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
 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생략)

② ~ ⑤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생략)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생략)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
 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
 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
 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

----- 납부일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신 설>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
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

나.·다.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
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
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
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
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 라. (생 략)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
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
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
는 금액

나. -----
- 후 1주일 초과 1개월 --
-

다.·라. (현행 나목 및 다목
과 같음)

3. -----

--

<삭 제>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생 략)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무
서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
호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 납
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
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국세
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

4.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
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
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
다)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
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
자의 -----

③ -----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 ⑪ (생략)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 ② (생략)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
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
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
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
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

1. (현행과 같음)

2. -----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고충민원의 처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한한다),
납세자의 -----

④ ~ ⑪ (현행과 같음)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포상금

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

----- 신고의 무 불이행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6호의2-----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해외금융계좌정보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0조 및 제91조-----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연 락 처	(044) 215 - 4151